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·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10. 26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0. 10. 20. 김진천 의원 외 6명
나. 회부일자 : 2020. 10. 20.
다. 상정일자 : 제244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20. 10. 26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김진천 의원

가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있는 아동·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 및 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여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1)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2) 구청장의 책무(안 제4조)
3) 사업 및 예산의 지원(안 제5조)

4) 자립지원센터의 설치(안 제6조)

5) 자립지원협의회 설치(안 제7조)

3. **검토보고** (조광현 전문위원)

○ 「아동복지법」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·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고, 특히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4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·경제적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.

○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 아동·청소년 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·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발의된 안건임.

○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퇴소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고, 안 제5조에서는 구체적인 추진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예산의 지원, 안 제7조에서는 자립을 돕기 위한 협의회의 구성을 정하는 등 총 8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되어 있음.

○ 아동·청소년 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청소년들은 만 18세에 이르면 대부분 자립 능력의 유무나 자립 상황에 상관없이 퇴소함으로써 복지시설 출신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준비되지 못한 홀로서기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됨.

○ 본 조례가 시행되면, 제도적 보장을 통해 보호조치 종료 후의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고 세심한 배려와 사회적 지원으로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○ 다만 조례가 시행되면 추진사업 중 주거안정 지원사업, 생활·교육·취업 지원 사업 등 사업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관련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며, 우수한 정책 발굴과 적극적 시행이 필요하다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 타 : 없 음